

의안번호	2203961
의 퇴 인	서천호 의원
회 답 일	2024. 10. 29.
추 계 번호	24C3787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,268억원(연평균 654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	683	668	653	639	625	3,268	654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법률 제8541호 부칙안 제7조(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)	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금액 상한을 연금보험료의 50%에서 70%로 상향 조정	의무규정
2	법률 제11143호 부칙안 제7조(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)	사업장가입자인 농어업인 또는 사업장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금액 상한을 연금보험료의 50%에서 70%로 상향 조정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법률 제8541호 부칙 안 제7조(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)	○	과거 지원 대상자 수 및 지원액 추세를 고려하여 추계
2	법률 제11143호 부칙 안 제7조(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)	○	과거 지원 대상자 수 및 지원액 추세를 고려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현행법 및 동법 시행령, 관련 보건복지부고시를 참고하여 개정안에 따른 지원 내용은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 시 연금보험료의 70% 정률 지원,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초과 시 연금보험료 6만 4,890원(103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 92,700원의 70%)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 - 현재 「국민연금법 시행령」 제20507호 제2조는 농어업인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‘기준소득금액’ 이하인 경우 50%를 정률 지원하고, 초과인 경우 ‘기준소득금액’의 50%를 정액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「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300호)는 ‘기준소득금액’을 103만원(월 연금보험료 92,700원)으로 설정

- 추계기간의 월별 지원 대상자 수 및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평균 지원자 수와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2024년 유지되고, 이후에는 2021~2023년의 연평균 변동률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
 - 2023년 7월 1일부터 농어업인 제외 기준 중 재산 기준이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변경¹⁾되었으므로, 2023년 7월 이후의 대상자 수와 평균 기준소득월액 자료를 활용하여 2024년 대상자 수 및 지원 단가를 산정
 -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월평균 지원자 수는 감소한 반면, 평균 지원 단가는 증가한 추세가 추계기간 지속된다고 가정
 - 단, 가입유형(지역가입자, 사업장가입자)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자 수 및 1인당 평균 지원 단가를 산출하여 추계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 - 참고로, 현행 법률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 시행 시 총 재정소요에서 현행 제도 유지 시의 총 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
- (개정안 시행 시 총 재정소요)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농어업인 수 및 평균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자들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여 2024년 월 평균 지원자 수 및 1인당 평균 지원

1) 「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10호, 2020. 6. 30.)

단가를 산정한 후, 2021~2023년의 실적치 변동률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월 평균 지원 대상자 수와 지원 단가를 산출

[표 2]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현황(2023년 7~12월)

(단위: 명, 원)

기준소득 월액	구 분	2023년						월 (가중)평균
	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
103만원 이하	월 지원자 수	206,579	206,458	206,572	207,435	205,514	200,797	205,559
	평균 기준소득월액	958,589	959,843	960,160	961,072	961,302	962,070	960,499
103만원 초과	월 지원자 수	108,175	107,738	107,364	107,545	106,703	109,394	107,820

자료: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[표 3]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현황(2021~2023년)

(단위: 명, 원, %)

기준소득월액	구 분	2021	2022	2023	연평균 증가율
103만원 이하	월 평균 지원자 수	217,433	208,608	200,797	-3.9
	평균 기준소득월액	940,292	949,940	962,070	1.2
103만원 초과	월 평균 지원자 수	117,568	111,808	109,394	-3.5

자료: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추계결과,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총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조 633억원(연평균 2,127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: 2025~2029년

기준 소득월액	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103만원 이하	월 평균 대상자 수 (명, A)	197,539	189,832	182,425	175,307	168,467	-	-
	평균 기준소득월액 (원, B)	971,558	982,745	994,060	1,005,506	1,017,084	-	-
	1인당 평균 지원 단가 (원, C=B*9%*70%)	61,208	61,913	62,626	63,347	64,076	-	-
103만원 초과	월 평균 대상자 수 (명, D)	104,004	100,323	96,773	93,348	90,045	-	-
	1인당 평균 지원 단가(원, E)	64,890	64,890	64,890	64,890	64,890	-	-
추가재정소요 (억원, A×C×12개월+D×E×12개월)		2,261	2,192	2,124	2,060	1,997	10,633	2,127

- (현행제도 유지 시 총재정소요)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농어업인 수 및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2024년 월 평균 지원자 수 및 1인당 평균 지원 단가를 산정한 후, 2021~2023년의 실적치 변동률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월 평균 지원 대상자 수와 지원 단가를 산출

[표 5]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현황

(단위: 명, 원, %)

구 분	2023년						월 평균
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
월 지원자 수	306,257	309,023	305,458	310,937	308,624	305,122	307,570
1인당 평균 지원 단가	44,236	44,261	44,275	44,289	44,293	44,330	44,281

자료: 농림식품축산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[표 6]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현황

(단위: 명, 원, %)

구 분	2021	2022	2023	연평균 증가율
월 평균 지원자 수	338,759	323,805	307,688	-4.7
1인당 평균 지원 단가	43,068	43,397	44,409	1.3

자료: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추계결과,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7,366억원(연평균 1,473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7] 현행제도 유지 시 총재정소요: 2025~2031년

(단위: 명, 원,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월 평균 대상자 수(A)	293,125	279,359	266,240	253,736	241,820	-	-
1인당 평균 지원 단가(B)	44,864	45,454	46,053	46,659	47,273	-	-
총재정소요 (A×B×12개월)	1,578	1,524	1,471	1,421	1,372	7,366	1,473

- 추계결과,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,268억원(연평균 654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개정안 시행에 따른 총재정소요(A)	2,261	2,192	2,124	2,060	1,997	10,633	2,127
현행 제도 유지 시 총재정소요(B)	1,578	1,524	1,471	1,421	1,372	7,366	1,473
추가재정소요(A - B)	683	668	653	639	625	3,268	654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